

자동차점검·정비명세서

차량	등록번호		차명(차종)	()	주행거리	km
소유자	등록연월일		점검·정비 의뢰일자			
정비 사업자	사업자등록 번호		정비업등록 번호			
	업체명 (대표자)	()	주소	(전화번호:)		
	점검·정비 완료일자		출고일자	정비책임자	(서명 또는 인)	
점검·정비내역				추가정비동의여부		[] 동의 [] 부동의
작업내용		부품				공임
		구분	수량	단가	계	
부품	공임	소계	부가가치 세		총계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 (서명 또는 인)

대표이사 (서명 또는 인)

안내사항

1. 정비업자가 점검·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·정비를 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4조제1항제2호).
 - 가. 차량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: 점검·정비일부터 90일 이내
 - 나. 차량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: 점검·정비일부터 60일 이내
 - 다. 차량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: 점검·정비일부터 30일 이내
 2.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자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.
 3.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): A
 - 나. 재제조품: B
 - 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): C
 - 라. 인증대체부품: D
 - 마. 수입부품: F
- ※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